서 울 회 생 법 원

보정권고

사 건 2024개회1161771 개인회생

김영오

신 청 인 남양주시 별내3로 251, 2004동 601호 (별내동, 별사랑마을 (채 무 자) 2-10단지)

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김충환

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즉시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없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.

아 래

변제계획안에 의한 적립금이 보정권고일 현재 2회분 납부되어 있습니다. <u>변제계획에</u> 의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**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** 변제금(최소 3회분 이상 + 1,000원)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

2025. 4. 22.

제509회생위원 장성식 전자서명완료

등본입니다.

2025. 4. 22.

서울회생법원

법원주사 김건형

